

탄 원 서

사 건 2021노426
탄 원 인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피 고 인 김문기, 김상현

위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세원정공의 별지목록 기재 소액주주들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김문기, 김상현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들어가며

탄원인들은 피고인 김문기, 김상현(이하 통칭하는 경우 ‘김문기 등’ 이라 합니다)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식회사 세원정공(이하 ‘세원정공’ 이라 합니다)의 소액주주들입니다. 탄원인들은 우량 기업인 세원정공의 발전성을 믿고 세원정공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김문기 등은 이와 같은 주주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세원정공과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으며 어떠한 피해 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탄원인들은 김문기 등에 대한 엄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귀 재판부께서는 김문기 등의 특경범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하여 이미 면밀하게 심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보다는 이로 인하여 회사인 세원정공과 그 주주가 입은 피해가 어떠한 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따라서 김문기 등이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소액주주들은 세원정공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했습니다.

세원정공은 세계 정상급의 자동차 제조 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그룹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로서, 1989년 7월 설립되어 꾸준한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 해외 진출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세원정공은 계열회사로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세원물산, 세원테크 등을 두고 있는 세원그룹의 주력 계열사이고 2022. 6. 30.자 연결재무제표 기준 6,20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판매량 증가로 인하여 1차 협력업체들이 그 수혜를 직접 받을 것으로 예견되는 시기였습니다. 1차 협력업체들 중에서도 특히 세원정공은 자동차 부품 관련 핵심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더하여 현대자동차그룹이 2000년대 설립한 해외 생산 공장에 자동차 부품 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세원아메리카, 삼하세원을 이미 설립한 상태였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에 탄원인들은 세원정공의 성장성을 믿고 공개된 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세원정공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3. 김문기 등은 세원정공에 대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러한 일감 몰아주기로 강탈한 이익을 승계 작업에 이용하는 등 사적 이익(私的 利益)을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 코스피 상장사(上場社)인 세원정공에서 김문기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대표이사로, 김상현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사, 그 이후부터 2022년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습니다. 따라서 김문기 등은 위임관계에 있는 세원정공에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지는 대표이사로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회사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로써 동시에 수천 명에 이르는 전체 주주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기 등은 자신의 책임을 도외시하고, 일감 몰아주기 와 경영권 승계라는 지극히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김문기 일가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는 SNI, SMT, 세진(이하 통칭하는 경우 ‘가족회사들’ 이라 합니다)에 대한 부당지원 내지 사업기회유용을 통해 상장사인 세원정공과 그 주주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으며 세원정공에 수천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습니다. 더 나아가, 김문기 등이 소유하는 가족회사들은 CKD 등 수출업무로 마련한 자금으로 점차 보유 세원정공 주식 수를 늘려가게 되었고, 2015년에는 SNI가 세원정공의 최대주주로 등극함에 따라 김문기 등은 세원정공의 최대주주인 SNI의 지배주주이자, 세원정공의 대표이사의 지위를 겸유하며 세원정공에 대한 더욱 막강한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김문기 등은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든 무마해보고자, CKD 등 수출업무는 안정적이거나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아니었다거나, 기존 세원정공 등이 CKD 등 수출업무를 수행할 당시 납기지연, 불량품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하여 새로운 물류업체를 설립한 것이라거나, 가족회사들을 설립한 것은 이전가격 과세문제 및 높은 리스크를 가진 해외사업에 상장사인 세원정공의 손실위험 노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가족회사들 설립의 시기와 당시 업황, 가족회사들의 설립 이후 세원정공 등 피해회사들과 가족회사들의 영업개황 등, 그리고 가족회사의 설립과 이를 통한 사업기회유용에 관하여 적법한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4. 김문기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세원정공의 주주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습니다.

- (1)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김문기 등의 범죄행위는 SNI가 설립된 2008년부터 발생하였고, 추정컨대 가족회사들은 아직까지도 CKD 등 수출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¹⁾ 세원정공은 2010년대에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판매량 증가에 따라 직접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였는데, 특히 이는 세원정공이 2000년대에 이미 설립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수출업무 확대에 기인한 바가 컸습니다. 그러나 김문기 등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큰 폭으로 제고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적기로 활용하였습니다.

김문기 등의 사업기회 유용으로 인한 주주가치의 훼손을 반영하여, 세원정공의 주가는 2014년 9월 경 최고 36,800원을 기록하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8,090원으로 3년 이상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2014년 하반기는 세진이 3개의 가족회사 중 마지막으로 설립되어, 세원정공 등이 수행하던 CKD 등 수출업무가 대부분 가족회사로 이전된 시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족회사들의 최근 일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까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세원아메리카, 삼하세원 등 세원정공의 해외 계열사로부터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대다수의 소액주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김문기 등의 범법행위로 주가급락과 거래정지라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김문기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주주가치가 중대하게 훼손되어가던 시기에, 김문기 등은 이에 관한 안전을 이사회에 부의하고,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얻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세원정공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것으로 알고 주식을 취득한 대다수의 소액주주들은 불측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2019. 7. 24. 한국거래소가 세원정공에 김문기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였을 때 비로소 김문기 등의 범죄행위를 알게 되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김문기 등은 조회공시로부터 약 7개월 전인

2018. 12. 4. 이미 기소되었으며, 세원정공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2018. 12. 10. 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원정공은 김문기 등이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로부터 7개월여가 지나, 그것마저도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억지로 공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공시에 따라 일부 주주들은 세원정공 주식이 수개월 후 거래정지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김문기 등의 기소 이후에 세원정공 주식을 취득한 셈이 되었습니다.

(3) 소액주주들은 추가하락의 손해 이외에도 세원정공 주식의 거래정지에 따른 손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세원정공의 주식은 김문기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2019. 7. 24.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거래정지와 그 장기화는 배임으로 인한 세원정공의 손해와는 구분되는, 김문기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주주들이 입은 또 다른 직접손해에 해당함²⁾이 분명하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00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이로 인하여 형언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2,517	2,540	99.09	2,558,970	10,000,000	25.59	-

2) 구체적으로 주주들은 거래정지 시점의 보유가액에 대하여 법정이율(연 5%)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1주당 약 1,300원입니다. 따라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제외한 세원정공의 주식 수가 5,335,773주임을 감안하면 소액주주들의 손해액은 최대 약 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여러 차례 기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원정공 주식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는 세원정공에 대하여 경영개선조치를 위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김문기 등의 범죄행위로 세원정공에 발생한 손해의 회복방안과 예방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상장폐지가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배주주인지 아니면 소액주주인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지배주주의 경우 상장폐지가 된다고 하여도 주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매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의 지배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직접적 피해가 없는 반면(상장폐지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헐값에 매수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소액주주들은 상장폐지에 따라 주식의 환금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회사의 재무상태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김문기 등은 이와 같이 상장폐지에 대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금액 변제, 가족회사 지분 포기 등 구체적인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가족회사들은 CKD 등 수출업무를 그대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렇다면 세원정공은 손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세원그룹의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재편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김문기 등과 세원정공 역시 회사의 손해 회복과 재발 방지책에 관하여 아무런 공개적인 약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기 등이 2022년 3월 세원정공을 포함한 세원그룹의 모든 계열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구체적인 피해 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김문기 등이 여전히 지배주주로서 세원정공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그들의 사임은 경영개선조치의 일

환이라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눈가림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5. 결론

소액주주들은 김문기 등의 범죄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주식의 상장폐지를 막아내고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김문기 등은 세원정공과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김문기 등은 세원정공과 소액주주들의 신음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정지의 장기화로 인하여 지쳐가는 소액주주들과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한 언론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가벼운 처벌로 면죄부만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김문기 등의 전적과, 회사와 주주를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때, 소액주주들은 그들이 이번 범법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상장폐지 등을 통해 소액주주들을 헐값에 축출하고, 형사재판절차가 끝나는대로 경영에 복귀하여 기업이익과 주주이익 훼손을 계속 이어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탄원인들은 김문기 등이 그들의 범법행위에 걸맞는 엄중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한국에 이와 같은 과렴치한 대규모 배임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합니다.

2022. 10. .

별지목록 탄원인들의 대리인

법 무 법 인 한 누 리

담당 변호사 김 주 영

담당 변호사 임 진 성

담당 변호사 김 주 연

담당 변호사 최 민 수

대구고등법원 제 2 형사부 귀중